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이정현 · 박선원 · 허성무
김우영 · 한민수 · 송기현
이상식 · 한준호 · 손명수
김의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,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·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「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·공모, 선정, 수행·관리, 연구개발비의 지급·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87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(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)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제9조,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「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<u>다만,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(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)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- ----- ----- -----<u>. <단서 삭제></u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(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)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

<u><신 설></u>	<u>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.</u>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제9조,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「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